

함양군 · 창원힘찬병원

사회공헌사업 협약서

함양군과 창원힘찬병원은 지역사회와 지속적 발전과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사회공헌사업 추진을 위해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

제1조 (목적) 본 협약은 함양군과 창원힘찬병원 간 『저소득계층 수술비 지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전반적인 지원과 상호 협력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협약기관)

1. 함양군
2. (의)상원의료재단 창원힘찬병원

제3조 (기본 원칙) 함양군과 창원힘찬병원은 상호 협력에 있어 당해 기관의 제 규정을 준수하고, 존중과 신뢰로써 본 협약의 이행에 최대한 협력한다.

제4조 (협약의 내용) 양 기관은 본 협약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상호 협약한다.

- 가. 지원대상자는 군민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기준 중위 소득 80% 이하의 저소득주민으로 한다.
- 나. 지원범위는 질병진료에 필요한 진단 검사비, 수술비, 진료비 등 환자부담금 전액과 보호자 없는 병동 이용부담금 전액으로 한다.
- 다. 진료과목은 정형외과와 신경외과의 수술적 치료로 한다.

제5조 (협의 조정) 본 협약서의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양 기관 간의 협의로 결정한다.

제6조 (비밀유지) 양 기관은 상호 교류를 통해 인지된 제반사항을 상대기관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지 않으며, 협약서의 효력이 종료된 이후에도 동일하다.

제7조 (효력) 본 협약서의 효력은 양 기관의 기관장이 서명한 날로부터 발효되며, 합의에 의하여 변경되거나 해지되지 않는 한 자동으로 매년 연장되어 유효한 것으로 한다.

제8조 (협약의 해지) 양 기관은 본 협약사항을 이행 할 수 없는 경우 혹은 협약의 필요성이 소멸된 경우에는 본 협약을 해지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서면 또는 구두로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법적 권리·의무) 본 협약서는 당사자들에 대한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도 가지지 않는다.

제10조 (기타) 본 협약 약정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서명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2020년 6월 2일



함양군

함양군수 서춘수



창원힘찬병원

병원장 이상훈